

# 예 산 총 칙

#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9,215,782	14,076,473
일반회계	444,646,807	13,339,404
특별회계	24,568,975	737,069
공기업특별회계	10,695,729	320,872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695,729	320,872
기타특별회계	13,873,246	416,1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9,757	19,193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293,041	38,7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22,719	57,682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253,681	7,61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64,048	292,92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82,72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 포함)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